

2026년 하반기 SBA 맞춤형 Kibo-Star밸리기업(해외진출연계) 지원계획 공고

□ 지원개요

- (목적) 기술보증기금(이하 “기보”)과 서울경제진흥원(이하 “SBA”)의 공동 선별지원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



- (지원규모) 3개社 내외
- (지원대상)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

요 건	세부사항	충족시기
① 창 업	창업기업 확인서(제출서류 참조) 통해 확인	접수마감일
② 추 천	서울경제진흥원으로 접수되어 추천된 기업	1차평가 (추천심사)
③ 기술성	기술보증기금 Kibo-Star밸리 선정요건 충족기업 ※ 2·3차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최종평가 실시하여 충족여부 판단	최종평가 (기술평가보증심사)

Kibo-Star밸리 선정요건	
공통요건 :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[참고1]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(제6차 혁신성장 공동기준) 영위기업 벤처·이노비즈기업, 초광역권 선도기업, 협약기관 추천기업	
① Level 1(Start-up) - 창업연한: 창업 후 3년 이내 - 선정기준: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	② Level 2(Build-up) - 창업연한: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- 선정기준: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&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

□ 지원 제외대상

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,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㉠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(보증금지·제한기업)[참고2]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[참고3] 해당 시 ㉡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[참고4] 해당 시 ㉢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·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㉣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확약서[별첨2]를 제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신청한 기업

-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,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보증기관(기보·신보·보증재단) 이용 중인 기업이 본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할 경우, 공모 신청 시 '보증관련대출 상환 확약서(별첨2)'를 제출하여야 하며, 추후 최종 선정 시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을 전액상환*하여야 합니다.

* 신규지원 보증부대출로 기존 대출금 상환 불가하며, 여유자금으로 상환

□ 지원내용

구분		Start-up 단계 (Level 1)	Build-up 단계 (Level 2)
금융 지원	사전한도*	최대 30억원	최대 50억원
	대상자금	▶ 자금용도 : 운전자금	
	우대사항	▶ 0.7% 고정보증료 (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우대사항) ▶ 보증비율 100% (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우대사항) ▶ 매출액 기반 자금산정 없이 최대 3억원까지 한도내 최초지원 ▶ 평가료 면제 ▶ Kibo-Star밸리 기업 선정서 교부	
	지원기간	선정일로부터 3년	
비금융 연계 지원**		▶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▶ 기술 경영컨설팅 등 전담 코칭 제공 ▶ 적극적인 홍보지원 (선정기업, 성공사례 등을 홈페이지, 블로그 게시 등)	

* 매출실적과 연계하여 한도내 단계별 지원

** 신청기업에 한해 선별적 지원

- **(해외진출지원)** SBA가 지원하는 **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***(미국, 에스토니아, 핀란드 등) 지원 시 가점 부여
 - (미국)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기회 마련
 - (에스토니아) 시정부와 협력하는 해외 실증(PoC) 지원사업
 - (핀란드) 북유럽 진출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헬싱키 최대 규모 컨퍼런스(Slush) 참여 연계 등

* 2026년 지원사업 기준으로, 2027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 및 지원절차

단 계	주요 내용	일 정	수행
온라인 신청·접수	▶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 접수 (https://mplus.startup-plus.kr)	'26.9.10.(목) ~ '26.10.7.(수) 15시	S B A
1차평가 (추천심사)	▶ 2차 평가 대상기업 추천	'26.10월	
2차평가 (요건검토·서면평가)	▶ 3차 평가 대상기업 선정 *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	'26.10월	기 보
3차평가 (평가위원단)	▶ 최종평가 대상기업 선정 * 평가위원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	'26.10월	
최종평가 (기술평가·보증심사)	▶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* Kibo-Star밸리 기업 선정요건 충족여부 확인	'26.11월	
최종선정	▶ 최종 선정기업 발표	'26.11월	
보증지원	▶ 혁신스타트업팀에서 사전한도 설정, 선정서 교부 및 보증서 발급	'26.11월 이후	
해외진출 연계지원	▶ 선정기업이 SBA 연계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	'27년 상반기 사업 예정	S B A

※ 선정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·접수기간 : 공고일 ~ 2026. 10. 7. (수) **15시** (기한 엄수)
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항 목	세부 내용
신청 방법	▶ SBA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(https://mplus.startup-plus.kr) 접수 * '26. 10. 7.(수) 15:00까지 홈페이지 접수 건에 한함 *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수 지연·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
제출 서류 [필수]	① 기술사업계획서[별첨1] ② 보증관련대출 상환 약약서[별첨2] (제출시점 보증이용기업에 한해 제출) ③ 서면평가 근거자료[별첨3] - 별첨3 파일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④ 주주명부 (공고일 이후 발급분, 개인기업 제외)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(2026.08.31. 기준) -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"동일하게" 지정하실 것 - <검색기준 2026.08.31.~2026.08.31. 자>로 발급 ⑥ 창업기업 확인서 (cert.k-startup.go.kr에서 발급) -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(규정상 기일)이 소요됨 - 창업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'에서 신청 필요 - 창업기업 확인서에 한하여 접수마감 후 '26. 10. 14.(수)까지 제출 가능
[선택]	⑦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자료 (관련자료 보유 기업에 한해 제출)

- (의무이행사항) 신청기업은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 등을 위한 기보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(추후 안내)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
□ 유의사항

- 기보의 보증지원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담보(보증서) 제공을 위한 지원입니다.
- 공고에 따른 지원내용은 지원시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하고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선정과정에서의 심사점수나 순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- 기술보증기금의 **최종평가**(기술평가·보증심사) 완료 이후 공모 진행을 포기하실 경우, 향후 공모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[참고5]의 안내문 참고하시어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문의처

- **(접수문의)** 서울경제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
(02-6958-9073, hkkim@sba.seoul.kr)
- **(상품문의)** 기술보증기금 서울혁신스타트업팀
(02-3215-5996, istartup@kibo.or.kr)

- 별첨
1. 기술사업계획서(양식)
 2. 보증관련대출 상환 협약서
 3. 서면평가 근거자료(양식)

- 참고
1.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
 2.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
 3.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 4.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 5.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

6대 분야	22대 세부산업	상세 내용
AI·첨단 네트워크 (AI)	① AI·AX	• 인공지능, 머신러닝, 딥러닝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AI를 적용하는 산업
	② 빅데이터	•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, 데이터 시각화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
	③ 차세대 모빌리티	• 자율주행, UAM, 스마트카 등 모빌리티 산업
	④ 차세대 보안·네트워크	• 5G·6G 및 통신인프라, 사물인터넷, 에지컴퓨팅, 클라우드 컴퓨팅, 보안, 복호화 등 보안·네트워크 산업
	⑤ 양자기술	• 양자컴퓨터, 양자통신,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산업
바이오· 뷰티 (BIO)	⑥ 레드바이오	• 제약·의료분야 바이오 산업
	⑦ 그린, 화이트바이오	• 농업·식품분야(그린) 및 친환경분야(화이트) 바이오 산업
	⑧ 디지털 헬스케어	• 원격의료, 디지털치료제, AI진단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
	⑨ 뷰티테크	• 혁신형 화장품, 미용 의료기기 등 뷰티테크 산업
문화콘텐츠· 서비스· 디지털 (Culture, Contents)	⑩ 문화콘텐츠	• K-콘텐츠·컬처, 웹툰,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
	⑪ 혁신형 지식서비스	• 공유경제플랫폼, 핀테크, 스마트물류 시스템 등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
방산 (Defense)	⑫ 우주항공·해양	• 우주항공(인공위성, 드론 등)·해양(첨단선박, 화물창 등) 관련 산업
	⑬ 첨단 방위산업	• 드론, 지능형무기, 무인무기체계 등 첨단 방위산업
	⑭ 방산기반산업	• 엔진, 추진체, 정밀부품 등 방산기반산업
에너지·환경 (Energy)	⑮ 차세대 원자력	• 소형모듈원전(SMR) 등 차세대 원전 산업
	⑯ 신재생에너지	• 수소에너지, 태양광, 풍력,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
	⑰ 에너지 인프라	• 차세대 전력망(스마트그리드 등), 고압직류송전(HVDC), 에너지 저장장치, 탄소포집 등 에너지 인프라 산업
첨단제조 (Factory)	⑱ 소재/부품/장비	•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정하는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
	⑲ 로봇	• 정밀제어, 지능형 로봇, AI휴머노이드 등 로봇 관련 산업
	⑳ 차세대 반도체	• AI반도체, 전력반도체, SiC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산업
	㉑ 차세대 디스플레이	• OLED, 마이크로 LED, QNED 등 디스플레이 산업
	㉒ 차세대 배터리	• 이차전지, 리튬황, 흐름전지 등 배터리 관련 산업

< 보증금지기업 >

1.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
2. 제1호의 자가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3.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4촌 이내의 혈족, 3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(사실혼 관계 포함)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또는 출자한 자
 - 나.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

< 보증제한기업 >

1. 휴업 중인 기업
2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3. '보증금지기업'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4.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5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
 - 가. 대표자
 - 나. 실제경영자
 - 다. 따로 정하는 "기준"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
6. 파산·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
7.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*
 - *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,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
8. "금융부조리 관련 기업"*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.
 - * 보증브로커 개입기업, 허위자료 제출기업, 금품제공기업, 부정청탁기업 등
9. 기금,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(이하 "신보"라 한다) 또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(이하 "보증재단"이라 한다)의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「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」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)
10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
11. 기금 보증사고기업(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)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 - 가.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'보증금지기업'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- 나.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- 다.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
 - 라.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
 - 마. 기금이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기금이 상환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
1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기업
 - 가.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,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'보증금지기업'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나.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(공동경영자 포함)
 - 다.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
14. 제12호 기업(마목 제외)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

참고3

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

구 분	세부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	
		10차	11차
도박 게임 관련	·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※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	3340	3340
	·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	46463, 47640	46463, 47640
	· 도박기계 임대업	69390	76390
	·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	75999	75995, 75999
	·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	91113	91113
	· 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	91242, 91249
사치 향락 관련	· 주류 및 담배 중개업	46102	46102
	· 귀금속 중개업	46109	46107
	·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	46331, 47221	46331, 47231, 46333, 47232
	· 귀금속 도소매업	46492, 47830	46492, 47830
	· 주점업	5621	5621
	· 노래연습장 운영업	91223	91223
	· 무도장 운영업	91291	91291
	· 마사지업	96122	96122
부동산 관련	· 주거용 건물 임대업	68111	68111
	·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	68121	68121
	·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, 부동산 투자 자문업	68221, 68222	68221, 68222
기타	·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	59142	59142
	· 전화방	91229	91229
	· 복권 발행 및 판매업	91241	91241
	·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	96992	96992

참고4

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

구 분	세부항목
결격요건 (1개라도 "부"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)	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,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임 ※ 다만,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
	② 실제경영자가(공고일 기준 2년 이내) 금융질서문란,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
	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
	④ 실제경영자(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)가 최근 2년 이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

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

-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부당개입 주요유형	
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	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
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	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
③ 허위 대출 약속	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
④ 정부기관 등 사칭	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
⑤ 부정청탁	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
⑥ 계약불이행	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

-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정부,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<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>

- (인터넷)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<https://www.kibo.or.kr/main>)
(경로: 고객마당 > 반부패신고센터 >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)
- (전화) 051-606-7551, 051-606-7563, 051-606-7568